

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사통계

구 분		내 용
승인번호		110028
승인일자		2008년 12월 3일
통계종류		보고통계
조사대상	지역	■ 전국
	범위	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
	보고단위	■ 개인
	보고대상 규모	■ 전국 약 31만명
보고항목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지방공무원 현원 - 기본현황(성별, 연령, 총 근무연수 등) - 인사운영(임용, 인사교류, 퇴직, 징계, 평균승진소요연수 등)
자료보고방법 및 작성방법		■ 지방인사통계 통합시스템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안전부로 데이터 수집 → 합산 → 통계산출 등 일련의 보고 과정을 자동화 및 검증
보고기간	기준시점	■ 매년 12월 31일
	보고시기	■ 작성기준년도 익년 3월
	보고주기	■ 1년
공표	공표시기	■ 작성기준년도 익년 5월
	공표주기	■ 1년
	공표방법	■ 간행물(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사통계) 및 누리집 공개
보고체계		■ 시·군·구 → 시·도 → 행정안전부
자료이용시 유의사항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작성된 것이며, 정원통계가 아닌 현원통계를 표시 하였음. 단,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국가직 고위공무원은 포함 ■ 통계표에 수록된 자료상의 비율은 각 값의 소수점 이하 2번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였음 ■ 일반임기제공무원을 제외한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은 지방 공무원 현원에 포함되지 않았음 ※ 별도정원(교육, 파견, 휴직인원) 미포함, 기간제근로자, 무기계약직 미포함
주요 용어해설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현원 : 기준시점에 당해 자치단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(교육, 파견, 휴직인원 미포함, 정원에 포함하지 않는 시간선택제 임기제, 한시임기제 미포함) ■ 일반직공무원 : 기술·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■ 특정직공무원 : 공립 대학 및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,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, 자치경찰공무원과 그 밖에 특수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■ 별정직공무원 : 비서관·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해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■ 정무직공무원 :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지방의회의 동의를 필요한 공무원, 고도의 정책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■ 임용 : 신규임용, 승진임용, 전직, 전보, 겸임, 파견, 강임, 휴직, 직위해제, 정직, 강등, 복직, 면직, 해임 및 파면시키 것 ■ 퇴직 : 법률에서 정한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여 공무원 신분에서 퇴직하는 것
주요 연혁		■ (2008년)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사통계 작성 승인(통계청)